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20호

삼익맨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삼익맨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7월 4일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가. 정비구역 현황

구역명	위 치	구역면적(㎡)	추진단계	비고 (최초결정고시)
삼익맨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	49,502	조합설립인가 (인가일: 2021.7.12.)	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62호 2020.2.13.

나. 해제기한 연장 : 2026.7.12.까지(2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147) 및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(☎02-3425-5984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